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개선방안

오 윤 (한양대학교 교수, 주저자)
이진영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교신저자)

■목 차■

Ⅰ. 서론
Ⅱ. 현행 제도
Ⅲ. 외국례
Ⅳ. 개선방안
Ⅴ. 결론

Ⅰ. 서 론

금년 초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내용이 일부 수정된다고 한다. 국세청이 안내장을 보낸 2천여명 중 약 2백명만 신고했다고 한다. 안내장을 받지 않은 자 중 신고한 자는 3백명을 조금 넘는다고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무언가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그 도입에 충분한 명분이 있다. 거주지주의에 입각하여 소득과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우리나라에서 거주자가 바깥으로 재산을 이전해 가는 것 그리고 바깥에서 벌어 처분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과세할 뿐 아니라 바깥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거주지주의 과세제도에 의하면 해당국에 부증가의 원천이 있을 때에 그에 대해 과세할 뿐 아

* 발표일 : 2011. 12. 21, 수정일 : 2012. 1. 21, 게재확정일 : 2012. 2. 20.

www.kci.go.kr

니라 다른 나라에 부증가의 원천이 있을 때에도 과세하면서 그 원천지에서 낸 세금을 공제해준다.

권력의 간섭을 벗어나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재산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그곳에서 세금 걱정 없이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거주지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가간 경제활동의 경계가 없어진 세계에서 자본은 국외로 유출되기 십상이며 국가경제가 활력을 잃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심지어는 거주지를 이전하기도 한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는 과세체계를 변경하는 방안과 현행 과세체계의 집행상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외국에서 번 것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방안이다. 모든 소득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사업관련소득이나 주식관련소득만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구주국가들에 보편화되어 있으며, 미국, 영국 및 일본에서도 검토 중이다. 자국에 연관된 산업자본 및 금융자본이 외국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국내로 회귀하는 유인효과가 있다. 다른 한편으론 국내에서 그 원천이 있는 부증가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과세한다는 의미에서 거주지이전자에 대한 출국세를 도입할 수 있다. 이는 자본이 해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후자는 외국에서 번 것에 대한 과세를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다. 이동성이 강한 금융자산에 대해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납세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할 수 없다. 원래 바깥에 자산을 두는 자는 정부의 간섭을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추가적인 위험이 예고되어 있지 않다면 새삼 움직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부간 협력,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자금세탁감시기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방안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실질 소유의 문제, 실물자산으로의 변경 등 과세망을 피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존재하며, 그러한 수단은 특히 고액자산가가 주로 접근이 가능하여 역진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숨은 것을 찾으려 하니 더 숨어버리는 격이 된다.

최근 각국의 경쟁적 제도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납세자간 긴장관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납세자

www.kci.go.kr

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제 막 우리나라에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연구하고 경제에 보탬이 되는 개선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현행 제도

1. 제도 개요

(1) 신고요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34조~제36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기관에 은행업무와 관련된 계좌(예 : 예·적금계좌) 또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것

다음의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및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www.kci.go.kr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2) 신고방법

다음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조법 별지 제21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여야 한다.

-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기관 이름,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2. 제도의 적용

(1) 신고할 경우

1) 세금 부과

소득세법은 개인에게 귀속하는 국외원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한 당연종합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외원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국외의 지급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경우 지급자는 국내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소득의 귀속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합산신고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로서 합산신고할 대상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신고와 납부의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다.

신고한 대상금액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그것에 대해 국내세법상 세금이 부과되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병행된다.

단순과소신고는 조세포탈로 보지 않으므로 조세범칙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거

www.kci.go.kr

의 없다.

자진 신고에 따른 과세상 혜택은 없다.

2) 사후관리・비밀유지

신고한 해외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다시 신고하여야 하며 추후 연도의 소득에 대해 합산신고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세무공무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국조법 제36조).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위 제4호의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및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과세정보 유출가능성이 실제 향후 해당 납세자에게 큰 조세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해외금융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형법은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의 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외금융정보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형법 제127조).[1)]

1) 참고로 독일형법(제355조)상 조세비밀누설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누설시 2년 이하의 징역

www.kci.go.kr

(2) 신고하지 않을 경우

1) 미신고 확인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부가 그 소상한 정보를 알지 못하므로 납세자가스스로 신고할 것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미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별론이다.

정부는 조세조약과 정보교환협정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자료를 토대로 일부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 국민이 자기가 그 일부 납세자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위험을 계측하여 자진 신고하고 무신고에 따른 조세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안에서 국세청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일반 국민의 금융계좌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 금융실명보장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과세목적상 금융기관에게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이 허용되고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정부는 2009년 하반기 이후 총 43개 국가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에 합의하였다. 2010년 중 14개 지역[2]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가서명 또는 본서명)하였다.

스위스 및 싱가폴과는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세조약 개정안이 비준동의를 위해 2011년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아직 홍콩 등 일부 지역과의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하지 않다. 실제 조약이 발효해도 상대방국가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우리 국민 일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는 없다.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독일민법(제839조) 및 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조세기본법 제30조 제5항은 고의에 의한 허위의 조세신고의 사실은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버뮤다, 사모아, 쿡 군도, 바하마, 건지, 마셜제도, 케이만 군도, 바누 아투, 라이베리아, 세인트루시아, 저지, 앵귈라, 코스타리카, 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

www.kci.go.kr

2010.5.27 정부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조약에 서명하였다.[3] 다자간 행정공조조약은 1988.1.25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4]와 OECD[5]가 다수 국가간 정보의 자동교환·징수협조 등 협력을 위한 다수 국가간 조약이다.

< 다자간 행정공조조약(CoE-OECD 조약) >

항 목		협 약 내 용
대 상 조 세		직접세, 간접세, 사회보험금 모두 해당
정보교환	정보교환종류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자동 정보교환, 자발적 정보교환
	해외조사	동시세무조사, 해외파견조사 등 가능
징수협조		가입국간 조세채권 회수를 위해 보전 조치 등의 징수협조 가능

위 다자간 조약에 의하면 정부는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자료 일체(이자, 배당, 사업, 양도, 부동산, 연금, 로열티 등)를 상대방국가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정보교환에 관한 국가간 조약이 발효해도 상대방국가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국민 일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는 없다.

국조법은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정보 요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국조법 제31조, 국조법시행령 제47조). 2003년 도입된 이 규정은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이 금융정보를 요청할 때에 우리 과세당국이 상대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공정보의 범위

3) 현재 가입국은 다음과 같은 22개국이다(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루투갈,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2011년 현재 국회에 비준동의를 위한 안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4) 참고로 EU는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지침(Directive)"을 마련하여 2013년부터 회원국 간 전면적 자동정보교환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자료 일체(이자, 배당, 사업, 양도, 부동산, 연금, 로열티 등을 망라)를 상대국가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일괄 제공하는 내용이다.

5) OECD 국가간에는 국내의 은행비밀보호법을 이유로 다른 국가의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지 않을 것, 자국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요청이라고 하여 상대방국가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을 것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www.kci.go.kr

는 다음과 같다.

-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 상속·증여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 체납자의 재산조회
-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정보 교환의 인적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개인 : 비거주자. 해외교포등 한국 국적자는 제외, 거주자로서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포함
- 법인 : 외국법인

2010년에는 조세조약(정보교환협정 포함)에 따른 금융정보 교환대상자에 (개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도 포함되도록 국조법이 개정되었다. 한국국적 비거주자를 제외하고, 외국국적 거주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국조법 제31조, 국조법시행령 제47조).

2) 제재

가) 과태료 부과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11년 미신고분은 5%)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 × 3%
20억원 ~ 50억원	6천만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 × 6%)
50억원 초과	2억 4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 × 9%)

www.kci.go.kr

나) 세금 부과

2011년 8월의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된 정보교환 자료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를 통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도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혐의가 있는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이 중 국내법인을 운영하면서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자가 24명이며, 국내 소득·재산 등에 비추어 자금원천이 불투명한 자금을 해외에 예치해 놓고 해외이자소득 등을 신고 누락한 혐의자가 14명이라고 한다. 이 이외에도 세무조사·국가간 정보교환 과정에서 파악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보면 금년 6월말로 종료된 해외금융계좌신고과정에서 약 2천3백명이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가 국세청에 의해 검토된 셈이 된다.

미신고자라는 이유로 조사를 할 경우 본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범칙조사를 받게 된다.[6] 만약 신고한 자라면 어떤 취급을 받게 될 것인가? 그 자도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지만, 범칙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신고자에 대한 유인 뿐 아니라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도 작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자의 신고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Ⅲ. 외국례

1. 미국

(1) 해외금융계좌신고

1) FBAR-상시적 신고

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해외에 금융계좌(은행계좌는 물론 파생상품,

6) 한・미 동시범칙수사 프로그램(SCIP) 협정에 의해 양국으로부터 동시에 세무조사와 수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www.kci.go.kr

뮤추얼펀드를 포함한 증권계좌, 일정한 종류의 연기금계좌 등)를 가지고 있고, 1역년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재무부에 Form TD F 90-22.1을 제출하여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라고 하는데,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10년 세금신고서에 보고되는 이자소득이 $1,500이상인 경우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가) 신고할 경우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계좌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다음해 4월 15일까지 동 소득을 미국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누락한 세금과 이자, 그리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FBAR에 의해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Schedule B, Part Ⅲ에 계좌보유사실을 보고하고(Yes에 표시 및 보유국가 기재), 동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Form TD F 90-22.1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가 없으면(non-willful) 계좌당 $10,000, 고의가 있으면(willful) $100,000와 계좌 최대잔고의 50% 중 많은 금액이 부과된다.

< 한미 제도 비교 >

	한국	미국
신고대상금액	해외계좌잔액 합계액 10억원 초과	해외계좌잔액 합계액 1만 달러 초과
신고대상기간	2010년 1년 동안	2003~2010년 8년
미신고시 제재	미신고잔액의 10%(2011년 5%)	2003~2010년 중 최대 미신고 잔액의 25%

www.kci.go.kr

2) OVDI-한시적 사면

2003년 4월 미국 국세청은 '역외 자진 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Compliance Initiative, OVCI)'을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역외구좌를 신고할 경우 납세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조세포탈범으로 기소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이는 통상의 FBAR에 의한 신고를 해오지 않은 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자산에 대해 신고할 기회를 주는 패자부활전과 같은 것이다. 일반 세금의 경우 수정신고가 인정되는 것과 같은 논리에 입각한 것이지만 유인을 주어 신고를 유도하되, 성실하게 신고한 자와의 형평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접근을 한 것이다. 국세청의 발표에 의하면 1,999명의 납세자로부터 48개 국가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한 신고를 받아 7천5백만달러의 직접적인 세수증가가 있었다고 한다.[7)]

2007년말 UBS 사건은 미국시민과 역외의 금융기관이 결탁한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는 그 규모 면에서 괄목한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역외탈세에 대응하는 국가간 협력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8)]

2009년 3월 미국국세청은 UBS사건에 대한 대응으로서 강화된 한시적 역외구좌 자진신고프로그램(OVDI: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9)] Initiative)을 가동하였다.[10)] 이에 1만 5천명이 자진신고하였다.[11)]이 프로그램상 신고기한은 2009년 10월 15일로 설정되었다. 처음에는 7,500명이 자진신고하였는데, UBS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간 조약으로[12)] 미국 국세청의 역외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접근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에 그 숫자가 1만5천명으로 증가한 것이다.[13)]

---

7) http://www.irs.gov/newsroom/article/0,,id=111987,00.html

8) http://www.bnai.com/UBSAffairAftermath/default.aspx

9) 일반적으로 잠재적인 탈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는 자발적 공개(voluntary disclosure)를 하면 형사소추를 하지 않는 책임을 피할 수 있다. 1952년부터 과세당국은 자수를 한 자는 소추를 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10) "New IRS Penalty Structure for Offshore Accounts Encourages Voluntary Disclosure" (57 DTR GG-1, 3/27/09).

11) http://www.irs.gov/pub/newsroom/ir-2011-14_korean.pdf

12) 이 조약에 따라 4,450명의 미국인의 UBS은행구좌정보가 미국 국세청에 전달되었다 (http://www.minnslaw.com/offshore-and-abusive-tax-shelter).

13) "Commissioner Says 7,500 Taxpayers Applied for Amnesty Under IRS's Offshore Program" (197 DTR GG-1, 10/15/09). "Shulman Says About 14,700 Taxpayers Voluntarily Disclosed Offshore Assets" (220 DTR GG-2, 11/18/09).

www.kci.go.kr

2011년에 다시 실시되었는데 그 신고기한은 8월 31일이었다. 이 조치상 미신고시의 과태료는 2007년에 비해 상향조정되었다. 개인납세자가 2003년에서 2010년의 기간 중, 최고의 통합잔액을 보유했던 모든 해외은행계좌상 잔액의 25%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자격요건에 따라 일부 소규모 납세자들은 5% 또는 12.5%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 참여자들은 또한 체납 세금과 최고 8년까지의 이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및/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한다.

(2) 정부의 해외금융계좌 정보획득

2003년의 자진신고제도(OVCI)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2004년 국제탈세정보협력센터(the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JITSIC)를 설립하여 국가간 정보교환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14] 2006년 1월에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탈세와 조세회피 등에 대응하는 국가간 협력채널인 Leeds Castle Group[15]을 결성하였다.

OECD를 통한 다자간 정보교환협정을 주도하는 한편, 그 협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확보하는 내용의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e Act)를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 FATCA-외국계 은행에 대한 조치

적격중개기관(Qualified Intermediary, QI)은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단순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 등에 관한 행정부담을 외국금융기관에 지우면서 그것의 업무집행의 적절성도 감시하는 장치이다. 현행 QI 제도상으로는 미국인이 외국법인으로 가장하여 그 신원을 국세청에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의하면 2013년부터는 외국금융중개기관(Foreign Financial Intermediary, FFI)이 미국 재무부와 정보제공약정

14) JITSIC를 통한 정보교환에는 그간 3~6개월이 소요되었는데, 2011년 현재는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조만간 15일 정도로 단축될 것이라고 한다.

15) Australia, Canada, China, France, Germany, India, Japan, South Kore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www.kci.go.kr

을 체결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FFI에 소득을 지급하는 미국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6)]

대상소득은 미국내 원천을 둔 이자, 배당, 임대료, 급여, 수수료, 연금 등 FDAP 소득(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 income)을 말한다.

정보제공 대상자산의 범주가 확대되었다. 그간 QI제도 하에서는 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외국인이 보유하던 것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FATCA에 의하면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증권이라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리고 외국법인이지만 미국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발행증권과 외국법인발행증권도 보고대상이 된다.[17)]

적격외국금융중개기관(Qualified Foreign Financial Intermediary, QFFI)은 개별 투자자들로부터 어떤 구좌가 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개별 투자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A의무), 미국인이 보유한 구좌의 식별을 위해 확인 및 실사절차를 거쳐야 하며(B의무), 미국인이 보유한 구좌와 관련하여 매년 일정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C의무), 불응하는 구좌보유자나 QFFI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다른 FFI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는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D의무), 미국국세청이 그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요구할지 모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E의무), 외국정부가 그 구좌에 관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보고면제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좌를 폐쇄하여야 한다(F의무).

실질적인 소유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 법인 주식의 의결권 또는 주식가치, 조합의 이익분배 또는 원본 지분, 미국인이 설정자인 신탁의 수익권의 10%이상의 보유
- 헤지펀드, PEF 또는 PIC와 같은 투자기구에의 소유지분

16) TAX COMPLIANCE AND ENFORCEMENT ISSUES WITH RESPECT TO OFFSHORE ACCOUNTS AND ENTITIES, SUBCOMMITTEE ON SELECT REVENUE MEASURES of the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on March 31, 2009 Prepared by the Staff of 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 March 30, 2009

17) 이에 대해서는 법안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협력비용이 과다하여 유럽 금융기관들이 미국시장에서 철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www.kci.go.kr

QFFI는 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 고객심사규칙(Know Your Customer Rule)
- 자금세탁방지 규칙
- 반부패규칙
- 관련하여 재무부가 공포하는 다른 규칙

2) UBS 사건

2007년 12월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재벌 Igor Olenicoff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스위스 UBS 은행이 탈세를 도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국세청은 UBS를 조사하였고, 스위스에 비밀구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가 5만 2천명, 투자액은 148억불에 이르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2009년 2월 UBS는 벌금 8.8억불, 300여명의 고객정보 제공,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업 일부 폐쇄에 합의하고 형사상 기소유예를 받았다.

한편 미국 국세청은 UBS를 상대로 UBS 구좌 보유자 5만 2천명의 고객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소송을 마이애미 법원에 제기하였다. 2009년 8월 19일 미국과 스위스 정부는 약 7,500명의 고객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그런데 이후 시점인 2010년 1월 21일 스위스 연방법원은 미국 정부에 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17일 스위스 의회는 미국·스위스 합의(2009.8.19)를 인준해줌으로써 스위스 정부가 미국 과세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제공된 정보는 2010년 6월 18일 현재 총 4,450건이다.

스위스 정부는 OECD의 정보제공원칙에 부합하게 국제적인 조약을 체결하겠다

18) 스위스연방행정법원은 스위스 금융감독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은행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의회만이 은행비밀보호를 완화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미국·스위스 조세조약 관련 조항의 엄격해석에 의하면 'tax fraud and the like'의 경우에 한하여 은행비밀보호를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 사건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양국 행정부간 합의가 조약의 정도에 이르면 위 조문을 사실상 개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이에 미국 스위스 행정부는 합의 관련 2010년 3월 31일 의정서에서 2009년 8월의 합의는 국가간 조약(international agreement)라고 명시하였다. 이에 스위스 의회는 최종적으로 2010년 6월 17일 국민투표부의 없이 2009년 8월 합의를 인준하게 된 것이다.

www.kci.go.kr

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미국 정부는 HSBC 및 Credit Suisse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및 케이만아일랜드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였다.

2. 영국

(1) 해외금융계좌신고-한시적 사면

2006년 의회에 제출한 영국 국세청의 자체 분석자료에 의하면 영국 거주자로서 국외의 금융기관에 구좌를 가지고 있는 자 9,289명 중 3.5%에 해당하는 327명만이 국외원천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4월 17일 영국 국세청은 같은 해 6월 22일까지 영국거주자로서 역외구좌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자진신고기간을 부여하였다(Offshore Disclosure Incentive Scheme). 신고한 자는 지난 20년간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면서 10%의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총 2,500파운드까지는 가산세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었다.[19] 6월 22일 이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가지고 있던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를 하되 그에 대해서는 30%에서 100%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과하려 하였다. 같은 해 6월 중순까지 단지 2,000명만 신고하였다. 그러나 기한 3일을 앞두고는 모두 2만5천명이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마감 임박하여 모두 6만2천건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세수입은 4억파운드를 초과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있었다.[20] 이런 실적에 불구하고 지난 20년간의 세금을 내라고 하는 조치 때문에 더 많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다.[21] 영국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장부 비치기장을 할 경우에는 6년, 조세범칙과 관련된 경우에는 20년까지 확대된다.

---

19) OECD, Companion Note Managing and Improving Compliance: Recent Developments in Compliance Risk Treatment A Catalogue of Revenue Body Initiatives, 2009, p. 30.

20) http://www.taxhistory.org/www/features.nsf/Articles/4AE5CE2840A29CF38525744B00613E28?OpenDocument

21) http://www.tax-news.com/news/UK_Offshore_Amnesty_Set_For_September_Launch____37844.html

www.kci.go.kr

2008년경 영국정부는 새로이 약 40만건의 영국인 금융계좌정보를 입수하였는데 이 중 약 26만명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에 영국정부는 2009년 의회 입법으로 금융기관의 정보제공이 의무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다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였다(New Disclosure Opportunity, NDO). 자진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경감된다. 정부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신고대상은 비단 해외금융자산 뿐 아니라 부동산 등의 다른 자산도 포함한다. 신고기간은 2009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이었다. 신고한 세금은 2010년 1월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7년에 신고하라고 통지를 받은 자가 그 때 하지 않고 이번에 할 경우 가산세는 20%이다. 그렇지 않은 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10%이다. 지난 6년간의 세금을 부과받는다. 조세범칙조사가 면제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조세사면(amnesty)이었다. 이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의 경우 30%에서 10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아울러 조세범칙조사가 개시될 수 있다.[22)]

(2) 정부의 해외금융계좌정보 획득

2009년 국내적으로 금융기관의 금융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2011년 영국은 자국 거주자의 스위스 은행예치자산에 대한 과세를 위해 후술하는 독일 사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스위스와 협상을 하였다. 스위스는 영국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종류에 따라 27%~48%(영국 한계세율 수준)로 원천징수한다. 향후 2년간 영국은 스위스에 정보를 최대 500건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추후 요청건수를 조정한다. 스위스는 영국 거주자의 스위스 은행 예치자산 중 그간 미과세분에 대해 예치 자산의 19%~34%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부과징수된 세액은 영국에 이전한다.

영국정부는 NDO와 동시에 Liechtenstein Disclosure Facility('LDF')를 추진하였다.[23)] 이는 영국정부와 리히텐슈타인정부가 리히텐슈타인 금융기관의 고객

22) 영국은 2010년 의사들에 대한 tax amnesty를 부여하는 등 조세사면을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23) http://www.hmrc.gov.uk/disclosure/liechtenstein-disclosure.htm

www.kci.go.kr

중 영국거주자인 자를 찾아내기 위해 협의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2009년 9월 발효하여 2015년 3월까지 지속되는 프로그램이다. 리히텐슈타인의 금융기관이 영국 거주자에게 접촉하여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더 내게 되는 세금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가산세를 10%로 감경하고, 탈세범칙조사는 하지 않는 방식이다.

3. 독일(이태리)

독일이 1988년 은행예금이자에 대해 10%의 원천징수세를 징수하게 되자, 룩셈부르크로 국내자금이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독일 정부는 수개월만에 이 세금을 폐지한 바 있다.[24)]

다시 1990년대초 정부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 다수의 독일인들은 자산을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으로 이전시켰다.

한편,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은행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하자, 정부는 다시 이 세금을 도입하였는데 그것은 독일 거주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었다. 독일 정부는 EC에서 모든 EU 거주자에 대한 20%의 원천징수세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룩셈부르크와 영국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2005년 7월 1일 우여곡절 끝에 EC Savings Directive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25)] 최근에는 독일이 EC Savings Directive를 시행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면세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독일 은행의 독일 주민의 잔고가 줄어들면서 이

24) http://www.fiscalreform.net/library/pdfs/global_tax_competition.pdf

25) EU는 EC Savings Directive(Council Directive 2003/48/EC of 3 June 2003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는 EU 역내 개인 거주자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지국과세를 배제하고 거주지국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득의 원천지국가는 거주지국가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 지침은 2005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당시 EU국가 중 벨기에, 룩셈부르크 및 오스트리아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는 15%, 그 다음 3년간은 20% 그리고 2010년 7월부터는 35%의 세율로 원천지국가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수령자가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스위스의 경우와 같이 세수 중 75%는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에 이전하여야 한다.

www.kci.go.kr

웃 룩셈부르크 주민의 잔고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26]

(1) 해외금융계좌신고-한시적 사면

독일 세법상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가 상시화되어 있지는 않다. 소득세법상 해외금융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필요할 경우 금융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해외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다가 추후 그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본세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지만, 적극적 은닉의 방법으로 구좌를 개설하고 그 구좌로부터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포탈로 처벌받는다. 독일세법상 조세포탈(Steuerhinterziehung)은 과세요건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에 관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언명(unrichtige oder unvollst ndige Angabe)을 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사실을 세무관서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을 때 알리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독일 조세기본법 제37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27]

독일에서는 조세포탈죄에 대해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면을 조건으로 그 신고를 유도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조세부담도 완화시켜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조세포탈에 대한 사면은 1차대전 전인 1913년 Wehrbeitragsgesetz(국방분담금법)이 효시이며, 바이마르공화국시절과 히틀러의 치하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1949년에 두 번의 조세사면이 있었다.[28] 주로 소득세와 상속세·증여세가 문제되었다. 사면의 내용은 형사소추의 배제인데, 동시에 실질적인 세금의 감면 혜택도 주는 것이다.

---

26) http://www.ucl.ac.uk/ippr/download/volume-2-2/IPPR_Vol_2_No_2-2.pdf?ref=Sex Shopu.Com

27) 조세범칙행위의 예로는 가장행위(은닉행위가 있는 경우), 그것의 객관적 내용에 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조세회피행위, 수익계상누락, 허위경비계상 및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등이 있다. 다만, 모든 사실을 진실대로 알렸지만 그의 세법적 의미를 착오로 알지 못하여 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요건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에는 무신고가 포함된다. 이 때 무신고는 세금부담의 감소를 그 결과로서 도출하여야 한다. 세금부담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조세채무의 확정이 되지 않거나 적게 되는 것 뿐 아니라 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게 된 것도 포함한다(독일 조세기본법 제370조 제4항).

28) http://www.germanlawjournal.com/pdfs/Vol05No04/PDF_Vol_05_No_04_339-346_Public_Kellner.pdf

www.kci.go.kr

1990년에는 1986년 이전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세사면이 시행되었다.

2003년 조세사면법(Steueramnestiegesetz[29])은 90년대 초 독일 정부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 독일인들이 해외로 이전시킨 자산을 본국으로 이전시키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입법의 주된 목표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및 룩셈부르크에 있는 해외금융계좌이었다. 과세대상시기는 1993~2002년까지였다. 사면대상이 되는 탈세행위는 2003년 10월 17일까지의 것에 한정되었다. 이 법의 적용은 2004년말까지의 사면신청에 한정된다. 사면은 신고후 1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30]

독일에서의 사면은 세액부담으로 볼 때 신청을 한 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다. 2002년 이태리의 조세사면법이 효과적이었다. 2003년 독일 조세사면법은 2002년 이태리 사면법에 비해 일견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태리에서는 7.8백억 유로에 이르는 본국 회귀자본에 대해 세금의 부과를 포기하고 과태료만 부과했다. 과태료율만 보면 이태리는 2.5%인데 독일은 25%이지만, 독일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31] 독일의 경우도 통상적 세금 부과는 없었다. 총 이자수익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25%이다. 통상의 40%의 세율보다 15%가 낮은 수준이다. 상속세의 경우 통상의 25%에서 5% 낮춘 20%로 되어 있다. 이태리의 경우 총 자금액의 2.5%이다.[32] 과세표준은 통상적인 신고의 경우보다 40%가 적은 금액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과거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StraBEG 제1조 제2항).[33]

---

29) das Gesetz ber die strafbefreiende Erkl rung (StraBEG)

30) http://www.strafverteidigerin.info/meinetaetigkeitsbereiche/01971b94ec0e3a401.html

31) 2009년 시행된 이태리의 사면은 2001년과 2003년에 이어 3번째이다. 탈세용의자에 대한 사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5%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 때 8백억 유로의 자금이 회귀하여 40억 유로의 과태료 수입이 있었다고 한다.

32) Frankfurter Allgemeine Finanzen지 2004.3.2일자 보도("Die Attraktivit t der Amnestie wird von vielen Steuerhinterziehern untersch tzt") 참조.

33) 이렇게 혜택을 준 것은 과거 13년간의 세금과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6% 복리)를 합산하면 은닉자금보다 더한 세금이 매겨질 수 있어 그간 존재하던 조세기본법상 자진신고의 경우에 대한 조세범칙소추면제조항이 거의 이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Paul Kirchhof, Der Weg zu einem neuen Steuerrecht,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2005, p. 175).

www.kci.go.kr

한편, 한번 사면을 받은 자는 이후의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그 사실이 자신의 기본적 정보로 작용하게 되어 있다. 자금세탁의 이력이 있는 자의 통관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미래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남게 되는데 행정적으로 이러한 두려움을 완화하는 장치가 필요하였다. 이에 구속력 있는 행정지침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과세관청의 데이터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료제공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기본법이 개정되었다.[34] 이는 사면신청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독일에서는 이 사면을 통해 14억유로의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56,724건의 사면신청이 있었다. 건당 약 25,000유로에 이른다.[35]

2011년 8월 독일에서는 스위스에 도피한 자금에 대한 조세범칙소추를 면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스위스에 최소한 1천3백억 유로의 자금이 도피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사면법은 늘 평등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36]

(2) 정부의 해외금융계좌 정보획득

2009년 7월 30일 tax haven 소재 금융기관에 구좌를 보유하는 거주자에게 그 구좌정보를 제출하고 이와 동시에 그 제출한 정보가 진실임을 선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추후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형사처벌된다 (Steuerhinterziehungsbek mfungsgesetz).

---

34) 2005년 4월 조세기본법 제93조 제7항이 신설되었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은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과세관청이 금융기관에 계좌정보를 자동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Kontenevidenzzentrale). 독일 과세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요청자 중 약 45%로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하였다고 한다 (2008년 10,936건). 2007년 6월 13일 연방헌재는 동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35) Bundesfinanzministerium, Gesetz zur Forderung der Steuerehrlichkeit: Bilanz der "Steueramnestie", Monatsbericht des BMF September 2005, p. 41 ~

36) http://www.ngo-online.de/2011/08/29/angela-merkel-cdu-steuern/

www.kci.go.kr

1) 스위스와의 조약

2011년 8월 독일은 스위스와 자국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스위스 은행이 원천징수하여 독일에 이전해주도록 조세조약 개정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이는 EU 및 OECD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정보 자동교환 방식을 대신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원천징수는 독일거주자의 스위스 내 금융소득에 대하여 스위스 은행이 완납적 원천징수 후 독일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독일거주자에 대해서는 26.375%(독일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독일은 스위스에 제한적으로 납세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독일이 스위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조세정보 교환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요청 사유(탈세혐의 등)를 적시하여 요청할 때 가능한 것이다. 스위스는 금융기관의 명칭은 제공하지 않게 된다. 향후 2년간 독일은 750~999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요청 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스위스에 도피해 있는 자금에 대해 그간 스위스에서의 미과세분에 대해 과세관청의 부과 또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예치기간, 자산의 증감 등에 따라 예치 자산의 19%~34%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예금주는 희망에 따라 스위스에서의 위와 같은 원천징수 대신, 독일과세당국에 스위스내 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스위스 은행협회는 기금을 조성하여 원천징수 세액 이전을 담보하고, 향후 원천징수세액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독일 대상 20억 스위스 프랑, 영국 대상 5억 스위스 프랑). 아울러 동 조약은 스위스 은행 등의 독일·영국 금융시장 진출 관련 규제 및 절차를 완화하고 독일·영국의 스위스 은행 고객정보 구매, 탈세를 도운 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양국간의 공식 서명,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13년 발효될 것이다.

2) 스위스 Credit Suisse은행

독일인들 중 일부는 스위스가 제공하는 이와 같은 틈새를 이용하여 자국에서의 과세를 피하고자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봄 스위스 은행의 직원이 독일거주자들의 은행구좌정보를 담은 CD를 독일 정부에 제공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www.kci.go.kr

독일 연방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는 이 CD를 250만 유로에 구매하기로 하였다. 스위스의 Credit Suisse 은행의 1,500명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자료는 과세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독일 거주자들의 과세자료가 들어 있는 것이었다. 그가 불법적으로 복제한 자료였다. 검찰청은 2억달러의 벌금을 받는 대신 기소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독일 내의 13개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에 따른 수사에 이은 합의이다.[37]

3) 리히텐슈타인 LGT(Liechtenstein Global Trust)

독일 연방정보부는 2008년 리히텐슈타인 글로벌 트러스트(LGT)의 직원으로부터 450만 유로를 지급하고 리히텐슈타인 금융기관에 구좌를 가지고 있는 독일 고객들의 금융정보를 구입하여 7백여명의 탈세자를 찾아낸 바 있다.

이후 리히텐슈타인 정부는 외국 과세당국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할 것임을 천명하였는데, 실제 미국, 독일, 영국 등 11개 국가와 체결하게 되었다. 리히텐슈타인을 빠져 나온 자금은 파나마, 싱가포르, 홍콩 등지로 이동해 갔다고 한다.

4. 일본

현행 세법상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채무명세서, 국외자산·채무, LLC등에의 출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있지만, 그 미이행에 대한 벌칙은 없다. 국외자산이나 국외송금에 대한 보고의무도 없다. 일본에서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일본에서 최근 한 전문가좌담회에서는 외국자산이나 국외자산의 잔고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 사면조항의 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조세피난처지역과의 정보교환 협정의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38]

---

37) http://www.mahanyertl.com/mahanyertl/germans-fine-credit-suisse-204-million-over-foreign-accounts/982/

38) 国際課税委員会(Japan Tax Institute),「海外個人資産への課税問題について」, 第47回 2011.2.24

www.kci.go.kr

2011년 일본 정부의 세제개정안에 의하면 ‘국외재산조서제도’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된다. 매년말 합계액 5천만엔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는 당해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외재산조서’를 다음해 3월 15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재산은 채권, 주식 뿐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한다.[39] 국외재산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5%p의 가산세를 경감하는 특례가 인정된다. 반대로 국외재산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p의 가산세를 추가한다. 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한 조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시사점

조세주권의 행사는 국경 안으로 제한되는데 사람과 자본의 이동은 국경이 없어진 오늘날 사람과 자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금부담의 관점에서도 스스로에게 가장 유리한 곳에 위치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개별국가는 자신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하고 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국의 힘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알게된 국가들간에 동병상련인 양 서로 돕는 체계가 다듬어지고 있다. 각국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협력의 진전은 느리다. 미국연방의 탄생과정이나 작금 유럽연합의 재정통합의 진통을 보면 재정주권이 국가 그 자체인 것 같다.

미국의 한 조세전문가에 의하면 2000년대 과세에 관한 미국 국세청과 법무부의 역량은 ‘역외’ 구좌의 ‘수익적 소유자’인 미국 납세자를 찾아 기소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40] 필자가 조사한 영국, 독일 및 이태리의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일본의 경우 학자들의 논의만 있을 뿐 정부의 적극적인 움

39) 우리나라 제도상 신고대상 재산이 채권과 주식으로 한정되고 부동산이 제외된 것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40) Joseph M. Erwin, The Developing Aftermath of the UBS Affair: A New Tax Order (http://www.bnai.com/UBSAffairAftermath/default.aspx)

www.kci.go.kr

직임은 없다.

이들 국가에서는 한편으로는 원천지주의적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재정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거주지주의의 현행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국외소재자산 특히 그 중에서도 해외금융자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자체적인 정보수집역량을 확대해나가는 점에서 대체로 공통적이다. 이들 국가의 제도 도입과 그 운영사례를 볼 때 다음과 같은 교훈 내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정기적 방법은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기본적 제도로서 그 존재의의가 인정되고 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상 해외 소재하는 자산이라면 주요 유형의 자산 모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산의 이동성이 높아 그것을 이용한 회피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자산 종류간 과세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다른 종류의 자산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의 파악을 위해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법은 정기적 신고와 한시적인 사면부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기적인 방법을 도입한 나라보다는 한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3) 한시적인 사면부여는 비단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세금 부과를 위해서도 여러 나라에 걸쳐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이용되어 온 방법이다. 세계은행 조사에 의하면 조세사면은 지난 30년간 선진국 및 개도국 여러 나라에서 자주 사용된 바 있다.[41] 세금부과대상은 해외원천을 둔 것보다는 국내원천이 더 많았으며, 조세의 종류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미국 과반 이상의 주에서 주세에 대한 조세사면이 실시된 바 있다. 참고로 일본세무대학교의 한 교수에 의하

41) http://go.worldbank.org/UZL7G8UJH0

www.kci.go.kr

면 조세사면은 다음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42]

① 임시적 세수확보형(特赦型)
② 신고오류등의 시정종용형 (基本型)
③ 규제강화에의 유화적 이용형(規制導入型)
④ 역외금융자산등의 신고형 (域外金融型)
⑤ 특정 조세회피 스킴 이용 신고형(租税回避scheme型

특히 ④는 2000년 이후 개인부유층을 대상으로 하여 OECD가 가맹국에 그 활용을 장려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역외금융구좌에 자산을 은닉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미국을 필두로 EU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4) 한시적인 방법은 각국의 사례에서 보면, 적절한 유인과 제재가 곁들여질 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유인의 제공은 평등원칙위배[43], 정부 공신력 확보, moral hazard 확산의 부작용도 적지 않다. 아울러 제공된 유인이 장기적으로 보아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입증이 없는 상황이다. 한시적 사면방법을 동원한 국가가 그 방법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연이은 사면에 불구하고 여전히 일탈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정기적 방법과 한시적 방법 모두에 걸쳐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유인

42) 居波(税務大学校教授), 「各国におけるタックス・アムネスティの利用実態」,国際課税委員会,第５２回, 2011.9.20

43) 독일 연방헌재는 1991년 1990년의 조세사면은 조세범칙자들이 '조세양심(tax honesty)'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합법성으로의 다리(bridge to legality)'를 제공하면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국고도 증가시키는 점에서 합헌이라고 보았다(BVerfG, Beschluss vom 27. Juni 1991. 2 BVL 3/89). IFA, Tax Amnesties General, Seminar N, 2009. 8.6을 참조할 수 있다. 또 연방헌재는 2008년 2월 25일에도 내용상 합헌결정(형식상 각하결정)을 한 바 있다(BVerfG, Beschluss vom 25. Februar 2008. 2 BVL 14/05).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자수를 하면 형이 감경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2010년 5월 20일 연방법원은 조사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형벌의 면제를 해 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BGH 20 Mai. 2010. Az. 1 StR 577/09). 2011년 현재 동 법원의 판단을 입법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www.kci.go.kr

과 제재를 조화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UBS 사건 등도 발생하여, 단순히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는 것 뿐 아니라. 역외금융기관으로부터 납세자정보를 입구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의해 납세자에게 신고를 압박하는 기법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유인으로서는 짧은 부과제척기간 적용, 가산세 감면 및 조세범칙조사 면제 등을 들 수 있다. 독일과 이태리에서 이런 유인의 제공이 많은 신고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인의 제공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신고한 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제재로서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중과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방법이 있다. 아울러 정부가 정보교환을 통해 이미 상당량의 금융계좌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암시하는 사건을 공론화하는 방법으로 제재가 가까이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제재의 예고는 영국, 미국 및 독일에서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

6) 정부가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 외국소재은행으로부터의 정보획득 또는 국가간 정보교환으로는 전체 국민에 관한 자료를 획득할 수 없다. 다자간 협력의 방법보다는 양자간 협의가 효과적이다. 양자간 협의상대국 선정, 요청대상 설정 및 정보획득방법상 과세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EU의 영국, 독일 및 이태리 등은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및 룩셈부르크와 개별적 협상을 하는데 있어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다.

7)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 국민의 신고성실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의추출방식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공표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납세자에 대한 국내외 금융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www.kci.go.kr

Ⅳ. 개선방안

1. 이론적 검토

아래에서는 1)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이 우리 과세체계에서 정당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와 2)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법이 목적달성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과잉한 것은 없는지를 본다.

(1) 목적측면

그것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적시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해외금융자산의 신고는 굳이 범죄행위와 비교하자면 일종의 자수라고도 볼 수 있다. 불성실, 부당 또는 부정의 일탈행위를 전제로 하는 행위이다.

저지른 일탈행동은 사회적으로 치유하여 행위자가 다시 사회에 건강하게 참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상시신고든 한시사면이든 다 이 목적에 공헌한다.

일탈행위자가 자진신고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정부가 그 그룹을 몰아 재정의 충족을 도모할 때에는 여러 우연의 요소가 뒤엉키는 혼돈스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는 실질을 규명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해외금융계좌도 그것의 실질 소유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실질 소유자가 그것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그의 연장선에서 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자산의 실질소유자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EU 국가간에는 역내지침을 통해 금융기관의 그것 규명에 관한 통일적인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과 거래하는 외국금융기관에게 고객실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는 가능할까? 납세자의 은닉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매우 곤란할 것이다.

이런 태생적 한계에 불구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거주지주의에 입각한 현

www.kci.go.kr

행 세법상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지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해외주식양도차익이나 해외투자펀드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현실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제도가 과연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즉 우리 과세체계 유지를 위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금융소득이 얼마만큼 과세에서 누락되고 있는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명백한 사실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여러 사건과 과학적 사례 분석을 통해 역외탈세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독일, 영국 및 이태리와 같은 국가에서 이웃 소국들로의 자본이탈(capital flight)은 역사적으로 여러번 그 심각성이 확인된 바 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주로 기업인들의 국내탈세자금이 국외로 이탈하는 경우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한국인의 자본인 경우가 많았다. 달리 국내의 일반 개인이 금융자산을 조세피난처에 두고 국내금융소득과세를 회피한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인근의 마땅한 곳으로는 홍콩과 싱가폴이 있을 정도이다. 간혹 조세피난처로 자산을 이전하여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증여재산자금출처조사의 방식으로 걸러지고 있다. 오히려 미국, 일본 및 캐나다와 같은 해외 거주하는 교포들이 국내외에 걸쳐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자가 국내 거주자가 되는 경우라면 해외에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 국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피부에 와닿는다.

이런 시각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의 정당성은 과세상 형평차원에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2009년 외국의 과세당국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정보자료를 요청할 경우 그것에 응하도록 세법에 개정되었다. 정보제공 요청의 대상에는 비단 요청국 거주자의 정보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거주자의 정보도 포함되었다. 각국이 자본시장에 국경이 없는 시대에 과세권의 실효적 행사범위를 국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되어 조세의 부과 뿐 아니라 조세의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도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된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에는 재산의 은닉이 포함된다. 재산의 적극적 국내은닉에 의한 징수회피가 국

www.kci.go.kr

내에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라면 재산의 국외은닉도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소재 파악할 수 없는 곳에 재산을 놓고 거기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의 단순한 과소신고가 아니라 적극적인 은닉에 의한 과소신고로 보고 아울러 그 소득이 만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2) 방법측면

거주자의 국외금융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실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은 어디인가? 일반인의 경우 그 예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44] 미국, 일본 또는 캐나다 등지의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국내외에 걸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자가 국내 거주자가 되는 경우라면 해외에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 국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더 빈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통해 해결할 사항인가? 오히려 홍콩이나 싱가폴 정부나 금융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정보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홍콩과 싱가폴이 포괄적인 정보제공에 협력할지는 미지수이다.

현행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의 이행방법의 설정상 과잉한 것은 없는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꼭 필요한 한도 내에서 납세자에게 국외소재자산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납세의무에 부수하는 것으로 수인가능한 요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당 납세자 뿐 아니라 과세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른 기관이나 회사에도 법에서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세법을 게임의 룰이라고 본다면 이

44) 이는 수치적으로도 설명된다.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 자)는 미처 10만이 되지 않는다. 해외금융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과세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자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세액공제받고 그 이상으로 세금을 더 내도록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해외금융소득에 대해 국내금융소득과 달리 종합합산하여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 자체가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미국, 독일 및 영국의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방식으로 되어 있어 신고누락의 효과가 두드러진다(EU국가간에는 이자소득의 거주지국 단독과세가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자국 거주자의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정보를 모를 경우 바로 세수일실로 연결된다. 독일에서는 2009년부터 완납적 원천징수(Abgeltungssteuer) 방식으로 바뀌었다).

www.kci.go.kr

러한 협력은 게임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자신의 국외원천소득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는데 그것을 창출한 해외금융계좌의 존재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라면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과세상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신고하면 될 뿐이며, 그것을 창출한 자산에 대한 신고는 그 의무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소득금액을 신고하면서 소득종류도 신고할 것인데 해당 자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실질을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필요에 의해 자산의 내용에 관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은 자신이 가진 정보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재량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납세자가 지게 된다.[45]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는 다른 일반의 과태료 수준 및 외국의 사례를 고려한다면 그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곤란하다. 다만, 법상 매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년 전부터 보유한 계좌에 대해 수년간에 걸쳐 한번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해마다 내도록 하는 부분은 과잉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신고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한 처우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금신고를 성실하게 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를 한 자가 그간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감경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매우 공평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아래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효과성과의 이익형량을 통해 계좌신고를 한 자에게는 과거 일탈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다.

45) 범죄소득에 대해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한 자가 범죄행위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그 사업활동의 내역을 알리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는 이행한 것이 된다. 이는 일종의 자신에 불이익되는 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을 권리(미란다원칙)와 같은 것이다. 알리지 않은 사실만으로 납세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납세자가 세금을 제대로 내기 위해 범죄행위를 소상히 알리자 그것을 알게 된 세무공무원이 사법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형사소추를 받게 될 경우 그 소추는 적법한 것이 된다.

www.kci.go.kr

2. 현행제도 보완

(1) 효과성 제고

1) 실적・평가

2011년 8월 31일 '세금탈루혐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세무조사 실시' 제하의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2011년 6월 이루어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에서 개인 211명, 총 9,756억원, 법인 314개, 총 10조 5,063억원의 신고가 이루어졌다(개인 평균 46억원, 법인 평균 335억원). 해외금융계좌 유형으로는 예·적금(95.7%), 주식(2.4%), 기타(1.9%) 순이었다.

< 개인의 해외계좌 및 신고금액의 국가별 분포현황 >

순위	국가별	계좌 수	국가별	금액(억원)
1	미국	408	미국	4,973
2	캐나다	68	싱가포르	1,509
3	일본	63	일본	795
4	홍콩	59	홍콩	653
5	싱가포르	48	캐나다	402

< 법인의 해외계좌 및 신고금액의 국가별 분포현황 >

순위	국가별	계좌 수	국가별	금액(억원)
1	아랍에미리트연합	405	말레이시아	17,773
2	베트남	389	아랍에미리트연합	14,448
3	중국	364	싱가포르	12,339
4	미국	295	미국	7,917
5	일본	275	영국	6,758

국세청은 해외에 거액을 예치했을 가능성이 큰 개인 2000명[46]에게 지난 5월 신

www.kci.go.kr

고 안내문을 보냈는데, 그중 10분의 1 정도만 신고한 것이다. 안내문을 보낸 2000명은 한국은행 전산망 등을 통해 건네받은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신고 내역과 건당 1만달러를 초과한 해외 송금 등 외환거래 내역 그리고 국세청이 과세 자료로 보유 중인 납세자 해외 소득금액 등을 토대로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자체 분석에 의하면, 개인의 경우 개별신고안내대상자 중 10.1%가 신고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해외계좌 신고와 더불어 과거 미신고 해외원천소득을 신고한 납세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재산반출과정이 불투명했던 납세자를 계좌신고를 통해 양성화하는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즉, 이번에 해외계좌를 신고한 납세자 대부분은 재산반출과정이 투명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해외원천소득도 이미 신고해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법인의 경우 해외상장기업 인수관련 주식 보유분, 건설회사의 현지 사업장 공사대금, 컨소시엄 계좌 등의 신고금액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금번 신고결과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다.

먼저, 금번 신고는 실제 상황인 모수를 상당 수준 반영한 것 아닌가 하는 시각이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영국 및 독일 등의 국가와 달리 거주자의 국외재산 반출이 그렇게 심각한 양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이 이번 신고를 통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 달리 과학적 검증은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위의 국가들보다는 그 현상이 심하지 않다는 데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것이다.

다음, 현행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시각이다. 그간 외국례를 볼 때 강한 유인과 제재를 곁들여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제도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에서 기존 과세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정책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몇 번의 신고에 의해 직접적인 세수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장기적으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존재의의가 있는 것으로 일반납세자가 인식하여야 한다. 이번 실적으로는 그런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46) 국외금융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부동산 거래 등 일정금액 이상인 자

www.kci.go.kr

2) 효과성제고방안

국세청은 자진신고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성실신고 유인 및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정기국회에서 다음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에는 과태료의 일부가 감면된다(국조법 제37조, 국조법시행령 제51조).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1억원까지의 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국조법 제35의조2, 국조법시행령 제51조의2).

위의 방안은 기존 제도의 미조정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보완책으로는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목적과 방법에 대해 다소 타당성이 떨어지지만 정당성이 인정되는 제도라면 그것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충분한 명분을 갖는 것이다.

기존 제도는 점차 보완해 가면서 한시적인 사면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가산세의 대폭 완화와 형사처벌의 면제를 약속함으로써 해외자본이 국내로 회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시적 사면은 자주 사용할 수 없는 방안이므로 아껴두었다가 국가가 재정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환위기 당시 특정채권제도를 떠올릴 수 있다. 한시적 사면이라 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상당한 조사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평소 저세율국 등 우리 세정상 취약지역의 정부 및 금융기관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여야 한다.

(2) 부작용 완화

1) 거주자 개념 정립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우리나라가 거주지국가인 자 즉 거주자에 대한 우리 세법상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의무 성립요건 중 거주자의 개념이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일본 소득세법처럼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여 거주자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민법상 개념과

www.kci.go.kr

동일한 문구로 되어 있지만 세법상 고유개념이라 할 수 있는 '주소'와 '거소'를 사용하여 거주자의 지위를 정의하고 있다. 그것을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구체적 판단기준(예를 들면, 체류일수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거주자 개념의 해석적용상 불확실성은 소득세 납세의무에 추가하여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에 의해 그 부작용이 증폭될 수 있다. 그 개념에 관한 보다 구체적 판단기준을 법규화하여야 할 것이다.

세법상 거주자 개념의 불확실성은 거주자 지위가 될 수 있는 경계선에 서 있는 투자자의 발길을 국내에서 멀어지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 독일, 영국 및 이태리는 국외로 나간 자본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에 준하는 한시적 사면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일종의 역주행의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 내년 국조법이 개정되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재외국민으로서 신고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은 이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국조법 제34조). 보다 근본적으로는 거주자 개념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2) 출국세 도입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거주지 이전을 과세사실로 보지 않고 있다. 과세권을 지키고자 하는 과세당국과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납세자간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 어떤 거주자가 계좌신고 시점 도래 전에 거주자 신분을 포기할 수 있다. 거주자신분의 포기는 비거주자가 되기 전 거주자로 있던 기간 중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조사를 통해 거주자로 있던 기간 중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세금을 징수할 수단을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 이 때 출국세(exit tax)는 비거주자가 되기 전까지 거주자로 있던 기간에 대해 예전 거주지국과의 조세채무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도구가 된다.

이는 국내에서 그 원천이 있는 부증가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과세한다는 의미에서 아래 서술하는 원천지주의와도 일맥상통한다.

www.kci.go.kr

3. 세제의 근본적 재검토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거주지주의 과세를 수호하기 위한 점진적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를 보완발전시키는 것과 병행하여 우리 세제에서 아예 이러한 제도적 수요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점차 원천지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견상 서로 반대방향의 제도인 것 같지만 국내에 보다 많은 생산자원이 남아 있게 하고 그 결과로서 국가재정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원천지주의의 국내세법은 국외원천소득을 과세에서 면제(exemption)하는 방식을 취한다. EU의 많은 국가가 국외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 일정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면세하고 있다. 배당소득은 사업의 결과 얻어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EU국가들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국외소득면제 방식을 취하지 않는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2008년 이래 일본 경제산업성의 주도로[47] 일본에서는 2009년 외국자회사배당익금불산입제도가 도입되었다.[48]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령하는 데에 대해 지금까지의 외국세액공제제도에 변화를 가하여 익금불산입을 항구적 조치로서 도입한 것이었다. 제도의 간소화와 사무부담의 대폭 경감을 도모하는 것에 더하여 기업의 경영전략·배당정책에 관한 제도적인 장애를 제거하고 중립성을 확보하여 일본에의 자금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함이었다. 시행된지 2년이 지난 2011년 배당수령에 대한 세제개정의 영향을 기업에 설문조사한 결과 제도도입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된 기업의 수가 40%후반~70%초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수령한 배당금액의 40% 정도가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로 사용되었다고 한다.[49]

미국[50]과 영국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51]

---

47)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008년 9월 집권한 아소다로 내각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48) 그간 있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폐지되었다. 내국법인이 그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한하며, 수령배당의 95%를 익금불산입한다.

49) 国際課税委員会(Japan Tax Institute),「わが国への資金還流と税制」,第53回, 2011.10.20.

50) Joint Committee on Taxation, Economic Efficiency and Structural Analysis of Alternative U.S. Tax Polici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2008.6.26

51) 영국 재무부가 주관하여 2007년부터 논의가 진행 중이다(国際課税委員会(Japan Tax Institute),「英国の国際租税の動向」,第51回 2011.7.26 참조).

www.kci.go.kr

Ⅴ. 결 론

국제적으로 재정과 금융문제가 번갈아가며 지구인의 일상을 흔들고 있다. 복잡다단한 시장과 거래속에서 보통인들은 불안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권력이 민간사회에 의해 휘둘리는 것이 낯선 얘기가 아닌 오늘날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보통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시장을 주도하든가 시장의 뒤에 숨어 개별 국가의 법제를 무시하거나 남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보통인들 사이에 형성된 정의를 지키기 위해 조세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한 조그만 수단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도입된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례를 조사하였다.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되는 외국례가 우리에게도 정당하고, 적합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는 한편,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았다.

필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완책은 그대로 추진해가면서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개념을 정비하고, 출국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시적 사면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시적 사면은 향후 우리에게 재정위기가 닥칠 경우 응급처방과도 같은 재정보충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좀더 길게 보면 세계사회는 국가간 통합이 심화되면서 재정권력도 나누어가지는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각 국가는 마치 한 나라 안의 지방자치단체와도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지역내에 원천을 둔 과세대상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 점에서 원천지주의적인 과세는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며, 이제 원천지주의적인 요소의 도입을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에 국가주권 양보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의 국내회귀를 도와 실질적으로 국부를 늘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제도에서라면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그 필요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끝)

www.kci.go.kr

〈참고문헌〉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Tax Amnesties General, Seminar N, 2009. 8.6

Joint Committee on Taxation, Economic Efficiency and Structural Analysis of Alternative U.S. Tax Polici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2008.6.26

Joint Committee on Taxation, TAX COMPLIANCE AND ENFORCEMENT ISSUES WITH RESPECT TO OFFSHORE ACCOUNTS AND ENTITIES , SUBCOMMITTEE ON SELECT REVENUE MEASURES of the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on March 31, 2009 Prepared by the Staff of 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 March 30, 2009

OECD, Companion Note Managing and Improving Compliance: Recent Developments in Compliance Risk Treatment A Catalogue of Revenue Body Initiatives, 2009

Paul Kirchhof, Der Weg zu einem neuen Steuerrecht,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2005

주제어 해외금융계좌, 조세정보교환, 조세사면, 거주지주의, 출국세

www.kci.go.kr

<Abstract>

The Role of 'Resident' Concept in the Age of Free Trade Agreements

Yoon Oh·Jin-Young Lee

The Foreign Financial Account Report System('FFARS') was introduced in Korea in 2011. The outcome of this new adoption after the first deadline of June the 30th in 2011 is proved not to be so impressive that the government is forced to amend it for the enhancement of its effectiveness.

In this paper the researchers analyzed the accep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FFARS and suggested a few improvements.

The FFARS is a tool to keep and strengthen the integrity of the residence-based taxation, which the Korean income tax system is based on. There are some hurdles in the current FFARS hindering its performance. The reportable foreign assets are limited within financial assets held in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ere are no concrete official guidelines to determine a beneficial ownership of such assets. Nevertheless it has a good reason of its being, that it is indispensable to encourage the faithful tax filing of the taxpayers in general.

People's perception to the competence of tax auditors has to be changed for their good compliance of the FFARS. The benefits of voluntary reporting have to be expanded while the severer sanctions being put against incompliance. Alongside it basic terms such as 'resident' have to be defined in a concrete manner. The introduction of exit tax may help the government to keep the capital in our territory as well as to raise tax revenue. A temporary measure such as tax amnesty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FFARS. However, it would be better to set it aside for a rainy day when the public budget undergoes a hard time.

Key words : Foreign Financial Account, exchange of tax information, tax amnesty, residence-based taxation, exit tax

www.kci.go.kr